

조문별 개정이유서

1.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확대(안 제2조제2항 각호 삭제)

가. 개정이유

-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을 확대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

나. 개정내용

- 사회·경제적 약자가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확대

다. 입법효과

- 현행 심판청구 후 1개월(청구인), 답변서 제출기간 내(피청구인)로 한정된 선임 신청기간을 심리종결 통지 전까지 확대하여, 사회·경제적 약자가 절차에 미숙하여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

2.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(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)

가. 개정이유

-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

나. 개정내용

-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*로 확대

*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생계급여·의료급여·주거급여·교육급여 수급자를 모두 포함

다. 입법효과

- 의료급여수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국민기초생활 수급 대상에는 포함되는 생계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에게도 지원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·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

3. 신청인의 편의 향상(안 제2조제3항 신설)

가. 개정이유

- 전자정부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

나. 개정내용

- 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*의 근거 마련

* 민원인이 제출할 서류를 담당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하는 전자정부 서비스

다. 입법효과

-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여 절차에 미숙한 사회·경제적 약자도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 증진

4.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(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서식)

가. 개정이유

- 신청인이 사용 중인 연락처를 신청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국선대리인 선임 시 원활한 소통을 하려는 것임

나. 개정내용

-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(별지서식)에 신청인의 연락처란을 추가하고, 제4조제2항의 인용 오기 수정

다. 입법효과

- 현행 신청서에 입력하는 특허고객번호에 저장된 연락처는 사용자가 직접 갱신해야 하므로, 저장된 연락처와 실사용 연락처가 다른 경우가 많아, 연락처 기재 시 원활한 절차 진행 가능